

석사학위논문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활용실태에 관한 연구

— 제주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

제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1997년 12월

中小企業 租稅支援制度 活用實態에 關한 研究

- 濟州地域 中小製造業을 中心으로 -

指導教授 高 富 彦

李 東 和

이 論文을 經營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7年 12月

李東和의 經營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審査委員長 經營學博士 金 斗 元 (印)

委 員 經營學博士 高 淙 權 (印)

委 員 經營學博士 高 富 彦 (印)

濟州大學校 大學院

1997年 12月

A Study on the Accounting Tax Support
of Support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Dong-Hwa, Lee

(Supervised by Professor Bu-Eon, Ko)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1997. 12.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
제 2 장 이론적 배경	3
제 1 절 중소기업의 정의	3
1. 중소기업의 질적 정의	3
2.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범위	5
제 2 절 중소기업의 일반현황	9
1. 위 상	9
2. 규모별	10
3. 업종별	10
4. 지역별	11
제 3 절 제주지역 중소기업의 특성	12
제 4 절 선행연구의 검토	15
1. 이재민의 연구	15
2. 이현규의 연구	15
3. 임기혁의 연구	16
제 3 장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	17
제 1 절 우리나라 조세지원제도	17
1. 재무구조 지원	17
2. 투자활성화 지원	22

3. 기술 및 인력개발 지원	27
4. 수출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	30
5. 창업지원	33
제 2 절 외국의 조세지원제도	36
1. 일본	36
2. 미국, 캐나다	37
3. 영국, 프랑스, 독일	38
4. 대만	39
5. 호주, 싱가포르	39
제 4 장 제주지역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활용실태분석	40
제 1 절 조사개요	40
1. 연구표본의 선정 및 특성	40
2. 조사목적 및 분석방법	41
3. 설문문의 구성 및 내용	42
제 2 절 중소기업의 세무실태 및 만족도 분석	43
1. 세무행적적 측면	43
2. 조세제도적 측면	47
제 3 절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	58
1.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현황	59
2. 현행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	60
제 5 장 요약 및 결론	61
참고문헌	64
설문서	67

표 목 차

〈표 2-1〉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범위	5
〈표 2-2〉 외국의 중소기업 범위	6
〈표 2-3〉 상시근로자수에 대한 고려	8
〈표 2-4〉 자산총액에 대한 고려	8
〈표 2-5〉 주민경제에서의 중소기업 비중변화	9
〈표 2-6〉 규모별 중소기업 추이	10
〈표 2-7〉 업종별 중소기업 생산액 현황	11
〈표 2-8〉 규모별 중소기업 추이	12
〈표 2-9〉 산업구조	12
〈표 2-10〉 부분별 비중(5인 이상 광공업체 기준)	13
〈표 2-11〉 제주지역 중소제조업 업종별 현황	13
〈표 2-12〉 도내 상공업자 현황	14
〈표 4-1〉 연구표본의 특성	41
〈표 4-2〉 설문문의 구성 및 내용	42
〈표 4-3〉 중소기업의 회계기장방법	43
〈표 4-4〉 과세표준 신고유형	44
〈표 4-5〉 조세정보 취득현황	44
〈표 4-6〉 기업형태별 애로(세부담)가 많은 세금	45
〈표 4-7〉 종업원 규모별 애로(세부담)가 많은 세금	46
〈표 4-8〉 매출액 규모별 애로(세부담)가 많은 세금	46
〈표 4-9〉 기업형태별 표준소득을 수준의 적정성	47
〈표 4-10〉 기업형태별 조세지원제도 활용현황	48
〈표 4-11〉 종업원 규모별 조세지원제도 활용현황	49
〈표 4-12〉 매출액 규모별 조세지원제도 활용현황	49
〈표 4-13〉 활용 조세지원제도 현황	50
〈표 4-14〉 조세지원제도의 활용 부진 이유	51
〈표 4-15〉 기업형태별 조세지원제도의 효과	52
〈표 4-16〉 매출액규모별 조세지원제도의 효과	53
〈표 4-17〉 기업형태별 조세지원제도의 개선사항	54
〈표 4-18〉 매출액규모별 조세지원제도의 개선사항	55
〈표 4-19〉 감면세액의 효과적인 사용용도	56
〈표 4-20〉 기업형태별 세액공제제도의 활용상의 저해요인 또는 문제점	57
〈표 4-21〉 매출액규모별 세액공제제도 활용상의 저해요인 및 문제점	58

ABSTRACT

A Study on the Accounting Tax Support of Support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Dong-hwa, Lee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of

Cheju National University

We have seen the promotion of equity and neutrality in the system of taxation in our country, as a result of several restructurings of the tax system. However, it is also believed that we have concentrated our efforts in obtaining income and redistributing income. As such, the present tax support system should be changed to promote the initiatives and vigor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o strengthen their responses to those changes in the economic environment, both in and out of the country, on their own terms.

Thus, along with solving these tasks, the idea of restructuring the tax support system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naturally, should be considered in connection with the direction of government policy which encourages the rise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t the same time.

In order to help to settle these problems and provide basic information to establish a tax support system, I studied all sorts of problems and bottlenecks surrounding the present system of taxation.

The summary of this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tax affairs administration, regarding the method of entering accounts i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53.7% stated that they use the direct registering method and 46.3% stated that they use a request registering method, and hire agents such as licensed tax accountants. About the method of reporting a standard of assessment of income tax, 64.4% stated that they reported a statement of accounts appending external adjustment, and 31.7% stated that they reported a statement of accounts appending internal adjustment.

As to the sources of receiving information on taxation, 61.0% stated that they get information from professionals such as licensed tax accountants, 17.1% stated that they obtain it from unions such as associations, 16.2% get it by researching tax law or magazines, and 5.7% responded that they come by it from taxation authorities. About the order of burdensomeness of taxes, the value added tax occupied 63.6%, and the income tax 28.0%. As to the appropriateness in standard ratio of income, 46.8% answered that the income tax is appropriate, 33.9% said the income tax is too high, and 12.8% replied that they did not know.

Second, in terms of tax systems, as to the use of the tax support system itself, 44.0% answered that they do not use the support system and 41.3% answered that they use the system very little. This demonstrated that they do not make use of this tax support system regardless of the form of

enterprise. the reasons for this poor use of the tax support system are, first and foremost, ignorance of the content and method of the tax support system according to 33.0% of the interviewees. Another 27.4% of the respondents stated that they are not subjects of the system and some of them also said they do not get much benefit from the tax support system. with regard to tax deductions within the tax support system, 48.1% answered that the support system is unsatisfactory and the practical deduction of tax is very small, 17.3% said the support systems are diverse but not very effective, and 13.5% replied that the systems themselves are good but it is not possible to make use of the systems under present tax policies. Clearly, most of the companies held negative views regarding the present tax support system. About the items expected to be improved in the tax support system, 26.4% answered that the conditions of reduction and exemption should be modified and the complicated procedures necessary to get any benefit from this system should be simplified, 24.5% opted for increased tax deductions, which means expanding the direct reduction of tax, 18.9% stated that the range of the supported subjects should be expanded, and 15.1% replied that administrative support, such as a tax survey, should be strengthened. About effective use of tax deductions, 24.0% answered that they used them to compensate for losses during capital transformation, 23.1% answered that they used them for managing funds, 19.2% answered that they used them for investment in facilities including automation, and 17.3% answered they used them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This survey demonstrates that as the managing environment changes more and more rapidly, the limits of the subjects. and conditions

of the running tax support system should be changed to be more flexible.

Finally, about obstructing factors and problems within the tax deduction system, 53.4% stated that the conditions of reduction and exemption, such as the range of application, are strict, 19.4% answered that the application procedures and documentation requirements of this system are complicated, and 17.5% replied that the deduction effect is miniscule because the intergrated limit is applied.

However, there are some limits in this paper.

First, since the subjects of this research are small and medium-sized manufacturing enterprises in Cheju-do only,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general realities applicable to the entire country.

Second, since the analysis on actualities of the tax support system was done in the context of the survey, the practical use of the tax support system in concerned companies may not be reflected precisely.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최근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중소기업은 국내·외 시장을 불문하고 국내기업뿐 아니라 외국기업과의 경쟁이 불가피해졌고, 또한 우리 경제의 범세계화(Globalization)가 크게 진전되어 세계경제와의 상호의존성 및 정보유통의 촉진 등 개방화에 대응하는 중소기업의 국제화전략은 중소기업 생존 그 자체를 위해 선택적이거나 보다는 필수적인 전략이 되고 있다. 한편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각계 각층의 다양한 욕구가 자연스럽게 분출되고 있으며 경영자율화의 확산으로 불필요한 제약이 제거됨에 따라 중소기업인들의 활동영역이 더욱 넓어져 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총수요관리정책 및 금융긴축정책 등으로 우리 경제의 안정화기조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변화여건에 신속히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축적된 능력을 미처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들의 부도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분야의 경우 3D 기피현상, 낮은 임금, 근로조건의 열악 등으로 기술·기능인력 부족현상이 심화되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악조건 하에서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책마저도 미비하다면 국가전체적인 차원에서 균형있는 산업구조의 발전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¹⁾

그러나 그동안 경제발전과정에서 우리의 기업은 재무구조의 취약성, 좁은 시장에서의 과도한 경쟁에 따른 자원의 낭비,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농업과 공업간의 불균형, 중소기업과 공업간의 불균형,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이중구조의 심화, 소득의 불균형 등 기업의 내외적인 저해요인이 누적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²⁾

- 이러한 점에서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제도는 매우 중요하며 우리 경제가 보다 더 지속적으로 경제안정과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1) 조희영, 박상범, 중소기업 경영론, 대영사, 1988, p5
2) 김윤환, 변형운, 한국경제론, 유평출판사, pp. 62-63, 1987.

국민경제의 이대지주로 균형있는 성장을 이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중소기업 자체의 부단한 노력과 아울러 세제면에서도 보다 더 실질적인 지원체제가 정립되어야 한다.³⁾

일반적으로 효율적인 세제지원은 소득의 재분배를 돕고 성장을 조장하고 정부가 화폐지출을 통하여 추구하는 갖가지 정책목적과 충돌하기 보다는 그것을 증진하도록 부과하게 된다.⁴⁾ 그러므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측면에서 지원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 지원정책의 하나가 조세측면의 지원이다.

따라서 조세지원제도가 중소기업 육성시책에 부합하는가 혹은 최소한의 지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효율성 원칙에 부합하는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제주지역의 제조업체인 경우 생산기반 취약 및 시장협소로 인해 제조업 경기의 지속적 침체와 수입 자유화 등으로 값싼 외국산 제품에 밀려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최근 들어 경영여건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본 연구는 제주지역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현행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활용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조세에 관한 제반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논문의 연구 범위는 중소기업의 지원세제에 국한하여 조세감면 규제법과 법인세법을 중심으로 현행 조세지원제도의 내용을 살펴본 후 제주지역 제조업중 상시 종업원 5인 이상 규모의 2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세지원제도 활용실태를 빈도분석 및 교차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조사 분석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3) 중소기업 기본법 제1조

4) 유한성, 재정학, 박영사, 1993, pp 20-21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 및 범위를 제시하고 제2장은 이론적 배경으로서 중소기업의 정의, 중소기업의 일반현황과 제주지역 중소기업의 특성에 관해 살펴본 후, 선행연구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에 관해 조세지원제도의 의의와 효과에 대해 연구하고 우리나라와 외국의 조세지원제도를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제주지역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실태를 분석한 후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한계점을 서술한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중소기업의 정의

1. 중소기업의 질적 정의⁵⁾

중소기업을 정의함에 있어서 종업원수나 자산총액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만 하면 모든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본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사실상 구별이 어려워진다. 이는 종업원수나 자산액을 기준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양적 정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라도 예컨대 대기업의 자회사나 대기업에 의해 실질적으로 지배되고 있는 기업은 실질적으로는 중소기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당연히 중소기업의 정의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양적으로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정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중소기업정책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또 이를 위한 정책의 방향에서 벗어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의 양적 정의가 주로 적용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중소기업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질적 정의가 전혀 적용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

5) 조관행, 중소기업사전(서울, 예코노미아, 1996), pp. 451-453.

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사업조정법은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하는 양적 정의만이 아니고 대기업의 자회사나 대기업에 의해 실질적으로 지배되고 있는 기업은 양적 범위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 질적 정의에 의해 중소기업을 정의하고 있다. 이는 양적 기준에 의한 중소기업이라도 경영의 독립성을 갖고 있지 않는 기업은 이른바 대기업의 분신으로 보고 중소기업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이다.

일부의 나라에서는 중소기업의 정의를 내린 다음 그 기초 위에서 양적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에 있어서 중소기업법(The Small Business Act)에 의하면 중소기업이란 ① 독립적으로 소유되고 경영하는 기업, ② 당해 사업분야에서 지배적이 아닌 기업, ③ 중소기업청장관이 정하는 기업규정기준에 적합한 기업을 말한다. 또한 대만에 있어서의 중소기업은 ① 법률에 따라 등록된 기업, ②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기업으로서 별도로 정하는 기업규모기준에 적합한 기업으로 정의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질적 정의에 관하여 주목되는 것은 영국의 불튼위원회의 보고서(Small Firms-Report of the Committee of Inquiry on Small Firms)가 채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이다. 이 보고서는 중소기업의 정의로써 통계적 정의(statistical definition)와 경제적 정의(economic definition)를 제시하였는데 전자는 양적 정의에, 그리고 후자는 질적 정의에 해당한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가장 적절하다고 고려되는 정의는 그 행동원리와 문제점에 있어서 대기업과 매우 다르다고 생각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특징을 명확히 나타내는 정의인데, 이 정의로서 경제적 정의를 들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경제적 정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소기업의 특징을 내용으로 한다. ① 시장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중소기업은 자기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이나 총공급량에 영향을 미칠만한 힘이 없으며, 따라서 전국적으로 보면 경쟁자가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② 기업의 소유자 또는 부분소유자가 개인의 판단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형식에 짜여진 경영조직이라는 수단에 의하여 기업을 경영하지 않는다. ③ 독립적인 기업이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일부를

구성하는 분신적 기업이 아니며, 소유자인 경영자는 의사의 결정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경제적 정의는 대기업과 대비한 중소기업의 본질적인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질적 정의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리하여 불튼위원회도 경제적 정의를 기초로 하고 실제적인 편의를 위하여 통계적 정의를 사용하였다.

2.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 즉 중소기업의 제도적 정의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자산총액,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규정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든지간에 그것을 기준으로 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완전히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종업원수가 중소기업의 범위를 측정하는 기본적이고도 실제적인 척도가 되고 있다. 다음 <표 2-1>에서 우리나라와 외국의 중소기업의 범위를 비교·제시하고 개정된 중소기업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표 2-1>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범위

	1982 이전	1995 이전		개 정 후	
	중소기업	소기업자	중기업자	소기업자	중기업자
제조업	상시종업원 300인	상시 20인	상시종업원	상시 50인	상시종업원
광업	이하 또는 자산총	이하	21~300인	이하	51~300인
운송업	5억원(택일)		이하		
건설업	50인 이하 또는	20인 이하	21~200인	상시 30인	31~200인
	5억원		이하	이하	
상업 및	20인 이하 또는	5인 이하	6~20인	10인 이하	11~20인
서비스	5천만원 이하		이하		

자료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를 요약한 것임.

〈표 2-2〉

외국의 중소기업범위

국별	업종	분류	비고
일본	· 공업 · 광업 · 운송업 및 기타업 · 도매업 · 소매업 · 서비스업	· 당시종업원 300인 이하 또는 자본금(출자총액) 1억원 이하 · 당시 종업원 100인 이하 또는 자본금(출자총액) 3천만원 이하 · 당시종업원 50인 이하 또는 자본금(출자총액) 1천만원 이하	· 양자택일 · 소기업은 종업원 20인 이하 · 소기업은 종업원 50인 이하
대만	· 제조업 · 가공업 · 수공업 · 광업 · 수출입업 · 상업 · 운송 업 및 기타 서비스업	· 불입자본금 4,000만원 이하, 자산총액 12,000만원 이하 · 불입자본금 4,000만원 이하 · 연간영업액 4,000만원 이하	
미국	· 제조업 · 광업 · 운송업 · 건설업 · 도매업 · 소매업 · 서비스업	· 당시종업원 500~1,500인 이하 · 당시종업원 500인 이하 · 연간종업원 350만불 이하 · 당시종업원 500~2,500인 이하 · 연간영업액 350~1,250만불 이하 · 연간영업액 1,700만불 이하 · 당시종업원 100인 이하 · 연간영업액 350~1,350만불 이하 · 연간영업액 350~1,450만불 이하	· 양적 기준과 질적 기준을 병행하여 사용
서독	· 제조업 · 도매업 및 소매업	· 당시종업원 500인 이하 · 당시종업원 100인 이하	· 소기업은 종업원 50인 미만, 연간매출액 1백만DM 이하 · 소기업은 종업원 10인 이하

자료 : 김종재, 중소기업경영론 - 이론과 사례, 박영사, 1997. p 9

참고로 외국의 중소기업의 범위를 살펴보면 〈표 2-2〉와 같다.

우리나라에서 소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고 있는 이유는 소기업은 보호육성의 차원이고, 중기업은 소량 · 전문화 · 다품종화 등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최적

의 기업개념이다.

특히 그동안 등한시되어 왔던 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기업의 범위를 확대시킴과 아울러 중소기업기본법 16조에 소기업에 대한 대책조항을 삽입시켰고, 특히 1995. 7.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지금까지의 종업원수, 자산총액 등을 중심으로 한 양적 정의와 더불어 업종의 특성,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 등과 같은 질적 정의를 같이 고려한 점이다.

즉, 지금까지는 종업원 수를 일차적인 기준으로 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업종의 특성 및 자산규모를 따져 중소기업의 범위를 결정하였던데 비하여,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같이 평가하게 된 것이다.

물론 이는 실질적으로 대기업의 지배하에 있으면서도 중소기업으로 존재함으로써 중소기업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을 받는 모순을 제거하기 위한 것인데, 그에 따르면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자외의 자가 단독으로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내지 5호에 해당하는 관계있는 자와 합하여 소유하는 주식(출자자분을 포함한다)이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임원의 임면 등으로 당해 기업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 사업활동을 실질적으로 지배한다고 통산산업부 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업이 아닐 것”이라 명시되어 있다.

1) 중소기업자범위의 특례 I

한편 위 표와 같은 일률적인 평가 외에 업종의 특성 및 자산규모에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적인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예를 보면, 다음 ① 상시 근로자수에 대한 고려, ② 자산 총액에 대한 고려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구분하는 이유는, ①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우 획일적 규정에 따라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모순을 제거하고, ② 종업원수의 상한을 인상함에 따라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분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표 2-3〉 상시근로자수에 대한 고려

표준산업분류	해 당 업 종	상시근로자수
10101	무연탄채굴업	700
17112	면 및 마 방적업	600
21021	골판지제조업	400
34300	자동차부품제조업	1,000
45302	전기공사업	100
50110	자동차도매업	50
60212	시내버스 운송업	500
72400	자료처리업	400
92112	광고영화제작업	50
:		
:		

자료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를 요약한 것임.

〈표 2-4〉 자산총액에 대한 고려

표준산업분류	해 당 업 종	자산총액(억원)
10	석탄광업	200
25	고무 및 플라스틱제조업	600
3001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800
37	재생재료 가공처리업	500
:		
:		

자료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를 요약한 것임.

2) 중소기업자범위의 특례 II

법 적용에 있어서 규모변동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여 중소기업시책 및 혜택을 부여하는 특례조항이다.

과거에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따른 상향이동시(합병, 설비투자 확대, 사업

전환, 협동화, 계열화 등) 그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난 기업에 대해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줌으로써 해당기업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는데, 신법에 따라 그와 같은 부분이 사라지게 되었다.

특히 기업간 합병, 창업된 중소기업이 창업 후 1년 이내에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는 제외(기본법 시행령 제5조)하고, 과거의 특례조항을 삭제한 것은 그에 따른 대기업의 악용사례가 종종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제 2 절 중소기업의 일반현황

1. 위 상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90년이래 그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95년 현재 전사업체 대비 중소기업 사업체수와 전체 종업원 대비 중소기업 종업원수에 있어서 각각 99.0%와 68.8%라는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표 2-5>

국민경제에서의 중소기업비중 변화

구 분	'90		'93		'94		95	
	개수	비중	개수	비중	개수	비중	개수	비중
사업체수(개)	67,679	98.3	87,913	98.9	90,447	99.0	96,357	99.0
종업원수(천명)	1,864	61.7	1,987	68.9	2,026	69.1	2,054	68.8
생산액(10억 원)	74,713	42.7	122,361	47.8	143,421	47.9	171,286	46.7
부가가치액(10억 원)	31,432	44.3	54,549	50.3	63,768	49.1	74,898	46.6
수출(백만불)	27,382	42.1	35,169	42.8	40,701	42.4	44,702	42.5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주 : 비중은 전체제조업중 중소기업(종업원 5인 이상 300인 이하) 비중(%)임.

2. 규모별 현황

〈표 2-6〉에서 알수 있듯이 1995년 종업원 5~49인 기업은 94년에 비해 7.4% 증가했으나 50인~99인 기업은 2.5%나 감소하였다.

〈표 2-6〉 규모별 중소기업 추이

(단위:개, %)

구 분	1990(A)		1994(B)		1995(C)		순 증 가	
	사업체	구 성	사업체	구 성	사업체	구 성	C-A	증 감
전 체 제 조 업	68,872	100.0	91,372	100.0	97,284	100.0	5,912	6.5
중 소 제 조 업	67,679	98.3	90,447	99.0	96,359	99.0	5,912	6.5
- 5 ~ 49 인	58,859	85.8	81,910	90.6	87,931	90.4	6,021	7.4
- 50 ~ 99 인	5,546	8.0	5,519	6.1	5,380	5.5	-139	-2.5
- 100 ~ 199 인	2,490	3.6	2,283	2.5	2,311	2.4	28	1.2
- 200 ~ 299 인	784	1.1	735	0.8	737	0.8	2	0.3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3. 업종별 현황

〈표 2-7〉에서 살펴보면 1995년말 현재 생산액 기준으로는 기계 및 장비업종이 10.98%, 음식료 업종이 10.3%, 섬유제품이 9.1% 순으로 나타났다.

<표 2-7>

업종별 중소기업 생산액 현황('95)

(단위:10억원, %)

구 분	생 산 액		구 분	생 산 액	
		비중			비중
○ 중 소 제 조 업	171,286	100.0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8,636	5.0
- 음식료품	17,621	10.3	- 비금속광물제품	11,063	6.5
- 담 배	333	0.2	- 제1차 금속	10,523	6.1
- 섬유제품	14,834	8.7	- 조립금속제품	13,119	7.7
- 의복 및 모피제품	6,478	3.9	(기계·장비제외)		
- 가죽·가방·신발	4,512	3.6	- 기계 및 장비	18,723	10.9
- 목재 및 나무제품	2,536	1.5	- 사무·계산·회계기계	2,129	1.2
- 펄프 및 종이제품	6,557	3.8	-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	7,862	4.6
- 출판, 인쇄 및 기록	4,371	2.6	장치		
매체 복제			- 영상, 음향, 통신장비	6,860	4.0
- 코크, 석유정제품,	668	0.4	- 의료·정밀·과학	2,636	1.5
핵연료			기기·시계		
- 화합물 및 화학제품	14,934	8.7	- 자동차 및 트레일러	7,328	4.3
			- 기타 운송장비	1,499	0.8
			- 가구 및 기타	5,531	3.2
			- 재생재료 및 가공처리	447	0.3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1996

4. 지역별 현황

<표 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도권 지역이 사업체수 기준으로 전체 중소기업의 55.8%를 차지하여 전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2-8〉

규모별 중소기업 추이

(단위:개, %)

구 분	1990(A)		1994(B)		순 증 가	
	사업체수	구성비	사업체수	구성비	B-A	증감률
○ 중 소 제 조	67,679	100.0	90,447	100.0	2,534	2.9
- 수도권	49,197	56.0	50,431	55.8	1,234	2.5
- 동남권	26,015	29.6	27,089	30.0	1,074	4.1
- 서남권	5,738	6.5	5,687	6.3	-51	-0.7
- 중부권	5,397	6.1	5,689	6.3	292	5.4
- 기 타	1,566	1.8	1,551	1.7	-15	-1.0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제 3 절 제주지역 중소기업의 특성

〈표 2-9〉에서 보는바와 같이 제주도의 산업구조는 3차산업의 6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반해 2차산업은 3.9%에 불과한 실정이다.

96년말 기준으로 제주지역 중소기업체수는 전국의 0.32% 수준으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비하며 종사자수 기준으로는 전국의 0.16%에 불과하다.(표 2-10)참조

〈표 2-9〉

산업구조

구 분	1차 산업 (농·임·어업)	2차 산업 (광 공 업)	3차 산업 (서비스업)
전 국	6.4%	29.8%	63.7%
제 주 도	33.1%	3.9%	63.0%

〈표 2-10〉 부분별 비중(5인 이상 광공업체 기준)

(단위 : 개, %)

'96 기준	전 국 (A)	제 주 (B)	B / A
사 업 체 수 (개)	97,508	311	0.32%
종 업 원 수 (명)	2,920,764	4,728	0.16%
생 산 액 (1 0 억 원)	400,609	399	0.10%
부가가치액(10억원)	174,743	185	0.11%

('96. 12. 31 기준. 제주도)

※ 인구 : 전국대비 1%, 총생산 : 전국대비 1%

또한 제주지역 중소제조업 실태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업체수 기분으로는 음식료품이 31%, 비금속광물이 17.7%, 조립금속·기계 및 장비가 14.1%를 차지하고 있고 인원수 기준으로는 음식료품 37.9%, 비금속광물 17.6%, 종이·인쇄가 13.3%를 차지하고 있다.(표 2-11 참조)

업태별 상공업자 현황은 〈표 2-12〉와 같다.

〈표 2-11〉 제주지역 중소제조업 업종별 현황

(단위:개, 명)

구 분	계	광 업	음 식 료 품	종 이 인 쇄	비금속 광 물	조립금속 기계 및 장비	화학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기 타
업체수	311	14	95	28	55	44	26	49
(%)	(100)	(4.5)	(31)	(9.0)	(17.7)	(14.1)	(8.4)	(15.8)
인 원	4,728	228	1,792	623	830	447	229	575
(%)	(100)	(4.8)	(37.9)	(13.3)	(17.6)	(9.5)	(4.8)	(12.2)

('96. 12. 31 기준, 제주도, 5인이상 업체)

〈표 2-12〉

도내 상공업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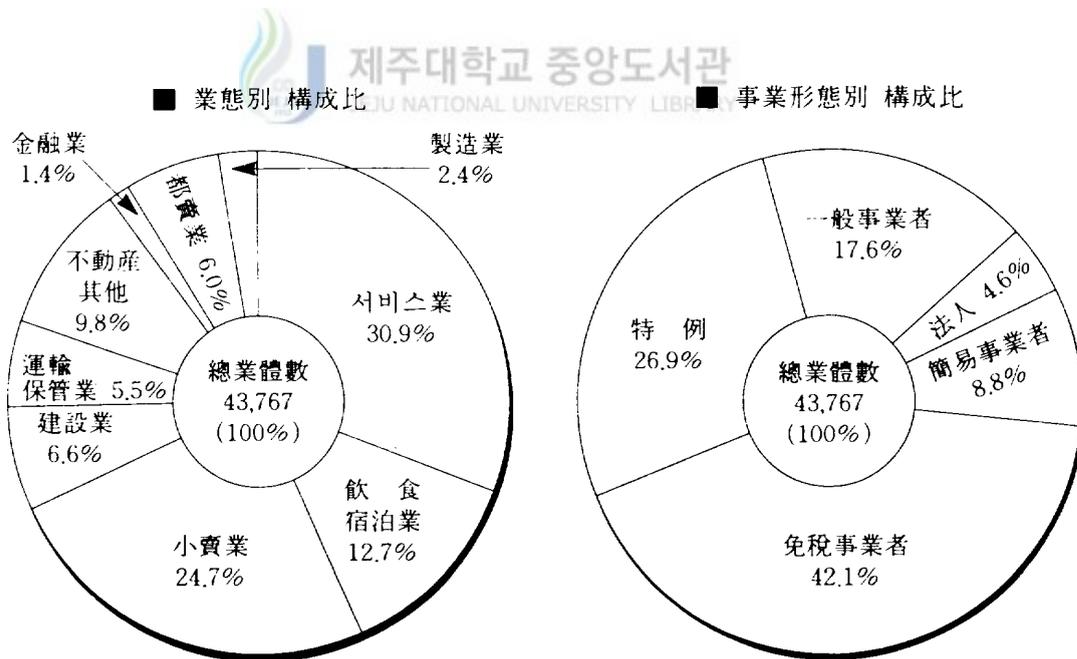
(1996. 12. 31 現在)

(單位:名(個))

業態別\區分	合 計	法 人	一般事業者	特 例	簡易事業者	免稅業體
合 計	43,767(100%)	2,037(4.6)	7,694(17.6)	11,797(26.9)	3,830(8.8)	18,409(42.1)
製 造 業	1,074(2.4)	241	601	173	12	47
都 賣 業	2,641(6.0)	203	1,447	32	29	930
小 賣 業	10,804(24.7)	117	1,739	3,384	1,239	4,325
建 設 業	2,904(6.6)	524	2,067	22	16	275
飲 宿 業	5,558(12.7)	80	707	2,889	1,882	-
運 輸 · 保 管 業	2,389(5.5)	139	235	1,930	82	3
金 融 業	602(1.4)	93	-	-	-	509
서 비 스 業	13,505(30.9)	476	505	1,638	436	10,450
不 動 產 其 他	4,290(9.8)	164	393	1,729	134	1,870

※ 非營利法人 및 公共法人業體는 除外(支店法人包含)

資料:濟州稅務署, 濟州商工會議所



제 4 절 선행연구의 검토

1. 이재민의 연구⁶⁾

이재민(1992)은 5인 이상의 중소기업체 445개 업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지원세제의 활용여부와 조세부과, 조세제도상의 문제점 등 중소기업의 세무회계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로는 1) 조세정보 취득현황은 세무사 등 전문가로 부터 얻는다가 42.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2) 기업경영상 애로(세부담)가 많은 세금으로는 소득세(법인세)가 62.9%, 부가가치세가 51.9% 순으로 나타났고, 3) 업종별 표준소득을 수준의 적정성은 높은 수준이다가 54.4%로 가장 높았으며, 4)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부진 이유로는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혜택이 별로 없다가 46.6%, 지원제도의 내용과 적용방법을 알지 못했다가 22.7%로 나타났고, 5) 중소기업 지원세제의 지원효과는 지원제도는 다양하나 세금경감효과가 적다가 49.7%로 가장 높았고, 6) 중소기업 지원세제의 개선사항으로는 지원대상 및 범위의 확대가 24.3%, 신청서류 또는 절차의 간소화가 19.3%, 세액공제 등 직접감면 확대가 16.2% 순으로 나타났고, 7) 세액공제제도의 활용상의 저해요인 및 문제점으로는 적용범위 등 공제조건이 까다롭다가 33.2%, 종합한도가 적용되어 경감효과가 적다가 26.5% 순으로 나타났고, 8) 중소기업이 납부할 세액을 직접 감면해 주는 세액감면, 세액공제와 세금징수를 유예해 주는 준비금, 특별상각 등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이현규의 연구⁷⁾

이현규(1993)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6) 이재민,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광운대학교 대학원, 1992.

7) 이현규,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연구, 석사학위 논문,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93.

2차 자료를 통해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1)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① 중소기업에 대한 임시 특별세액감면의 확대, ② 증자소득공제 축소, ③접대비 한도 확대 등이 요망된다.

2) 기술 및 인력개발 촉진을 위해서는 ①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의 확대 ② 시험연구용 시설에 대한 특별상각 확대 등이 요구된다.

3) 수출촉진을 위해서는 ① 수출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방법의 간소화 ② 해외 시장개척준비금제도의 개선 ③ 환율변동준비금제도의 신설 등이 필요하다.

4) 창업지원을 위해서는 ① 창업중소기업의 대상범위의 확대 ②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기간의 연장 ③ 지방세 감면대상의 확대 ④ 창업 영세기업의 우대 등이 필요하다. 그밖에 5) 납세 서비스 강화측면에서 ① 과세관청이 납세에 대한 서비스 강화 ② 세무공무원 증원 ③ 국세청 전산망 확충 ④ 홍보강화 등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3. 임기혁의 연구⁸⁾

임기혁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서울, 경기, 인천지역 95개 업체, 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서 40개업체 모두 135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세지원제도 활용실태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로는 1) 조세지원제도 활용실태는 활용부진이 37.8%, 적절히 활용이 34.3%, 무활용 21% 순으로 나타났고, 2) 조세지원제도 활용부진 사유로는 지원내용 및 방법을 알지 못함 35.0%, 대상 및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이 32.5% 순으로 나타났고 3) 우리나라의 현행 중소기업 관련 조세제도는 다양한 지원방식을 일관성 없이 제시하고 있고, 감면 등의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지원 대상과 지원요건에 대해 제한이 너무 많아 조세지원을 받아야 할 중소기업중 소수

8) 임기혁,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실태에 관한 연구-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1996.

의 특정산업 등에만 적용될 수 있는 행정편의적 지원제도로 나타났다.

개선사항으로는 1) 현행의 최저한세의 세율을 대폭 인하하거나 최저한세액제도의 폐지가 필요하다. 2) 세계상 결손금 소급 공제제도에서 소급공제기간을 1년에서 최소한 3년 이상으로 결손금 소급 공제제도가 개선되어야만 실질적인 자금남 해소를 위한 지원제도가 될 수 있다. 3) 복잡한 조세감면제도를 간결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4) 중소기업에 대한 차등세율 적용과 같이 중소기업 일반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조세지원제도 수립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제 3 장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

제 1 절 우리나라의 조세지원제도

중소기업 관련 조세제도를 검토함에 있어 각 제도, 각 규정을 분류하고, 구분하는 방법은 대체로 정책 목적에 따라 대분류하고 각 규정(제도)별로 세분류하는 2단계 분류가 보통이다.⁹⁾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대부분 조세감면규제법상에 규정하고 있는 바, 이하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현행 중소기업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세계상의 지원제도를 자세히 고찰하고자 한다.

1. 재무구조 지원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재무구조는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기업규모의 과중한 확대를 위한 과당경쟁과 타인자본선호에 의한 이자부담은 기업내실화를 잠식시켜 왔다. 이러한 경제상황에서 취약한 재무구조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

9) 상공부『중소기업 육성 40년』, 배봉오,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변천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생산성본부, 『중소기업 창업업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년감』 등에서의 분류가 그 예이다.

세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가. 세액감면대상기업

(1) 내국인으로서 제조업소득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제조업과 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방송업·엔지니어링사업·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한다.

따라서 제조업소득을 영위하는 것은 물론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어야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즉, 과세년도말 현재 제조업소득을 영위하여야 하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중소기업해당업종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조업 부문의 소득이 있더라도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중소기업 해당업종인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겸업사업자의 경우는 도매업이 주업으로 되어 있더라도 제조업소득부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2)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의 계산방법은 종전까지 제조업소득×세율×감면율(20%)=감면세액으로 하였으나 1996년 12월 30일 개정에 의하여 일반적인 감면세액의 계산방법인 법인세산출세액×제조업소득/과세표준금액×감면율(20%)=감면세액으로 하고 199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며(조감법 부칙 2 단서 법률 제5195호) 특별세액감면을 받는 경우에도 투자세액공제 등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른 세제지원을 받은 경우 특별세액감면은 영구적으로 배제하도록 한 규정도 폐지하고 199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조감법 부칙 2 법률 제5195호).

나. 감면대상소득의 범위

감면대상이 되는 소득은 제조업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이하 “제조업소득”이라 한다)이다. 제조업소득과 기타의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법인세법기본통칙 2-1-14……8의 규정을 준용하여 제조업소득을 구분 계산한다.

제조업소득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수익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정되며 예금이자·수입배당금·수입임대료 등의 영업의 수익이나 고정자산처분이익, 자산수증익 등의 특별이익은 제외된다.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이하 “지급이자”)는 그 차입금의 실제사용 용도에 의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이며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이하 “제조업소득의 개별 손금”)는 제조업소득의 개별 손금으로 계상한다.

다. 감면세액의 계산

(1) 제조업소득에 대한 감면

법인세산출세액 \times $\frac{\text{제조업소득}}{\text{과세표준금액}}$ $\times 2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 12. 31. 법률 제4666호) 제19조 경과규정에 의하여 1994.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감면율에 의해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구 분	제조업 소득금액	감 면 율
개 인 사 업 자	5천만원 이하분	산출세액의 20%
	5천만원 초과분	
내 국 법 인	1억원 이하분	산출세액의 20%
	1억원 초과분	

(2)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감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의 경우 당해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제조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조업소득금액이 전체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제조업부문에서 발생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으로 본다. 감면세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text{제조업등에서 발생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times \frac{20}{100}$$

제조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조업에서 발생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으로 한다.

$$\text{제조업에서 발생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 \text{적정유보초과소득} \times \frac{\text{제조업소득금액}}{\text{법인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금액}} \times \frac{15}{100}$$

다만, 기타 사업부문의 과세표준이 결손인 경우에는 제조업 소득금액이 전체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바, 이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라. 구분경리(조세감면규제법 제116조)

제조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4……8의 규정을 준용하여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구분 경리하여야 한다.

마. 추계과세시의 감면(조세감면규제법 제122조)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사. 세액감면의 신청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 감면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투자활성화 지원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규모가 영세하고 자본장비율이 낮으며 자금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투자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설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가 있다.

1)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가. 투자준비금의 설정대상 가입(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

투자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기업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300인(건설업의 경우에는 200인,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20인) 이하인 기업을 말하며, 다음의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내국법인이다.

- ① 제조업
- ② 광업
- ③ 건설업
- ④ 운수업
- ⑤ 수산업
- ⑥ 도매업·소매업
- ⑦ 부가통신업
- ⑧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건축·공학 및 기술 검사서비스업
- ⑨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컴퓨터설비자문업, 소프트웨어의 자문·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업 및 데이터베이스업)

⑩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나.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
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산 식〉

$$\text{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 = \text{당해과세년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자산가액} \times 20\%$$

① “사업용자산”이란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 2)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으로서 차량 및 운반구, 기구 및 비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을 포함하며,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② 자산가액이란 장부가액을 말한다.

여기서 “장부가액”이라 함은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의 합계액에서 감가상각비
(간접법의 경우 감가상각충당금)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
평가차액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자산의 평가차익을 포함
한다. 이 경우 감가상각충당금에는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또는 국고보조금으로 취
득한 고정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
칙 2-12-15……41)

다. 신고조정(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4호에 규정된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
로 산입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
한 것으로 한다.



나. 세액공제대상투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투자는 사업용자산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제외)한 경우이다.

(1) 사업용자산의 범위

“사업용자산”이란 중소기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중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 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으로서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중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

(2)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의 경우

중소기업해당사업과 그 외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자산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이 경우 주로 사용하는 사업은 자산의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사업으로 한다.(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3항)

다. 세액공제 적용방법(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제1항, 제2항)

사업용자산의 투자에 대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직접 공제한다.

다만,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마다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text{공제세액} = \text{사업용자산 투자금액} \times 3\% \text{ (국산기자재 5\%)}$
--

(1) “국산기자재”라 함은 국내에서 생산한 물자 또는 외국에서 수입한 물자를 원재료로 하여 국내에서 제조한 자재 및 기계와 그 기계에 부수되는 장치를 말한다.(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경우에 그 투자금액의 계산은 다음에 의한다.

① 국산기자재를 매입하여 그대로 사용한 경우

그 자산의 매입원가

② 국산기자재와 국산외의 기자재를 사용하여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산식>

투자금액 = 국산기자재의 매입원가 + 기계장치의 설치에 소요된 부대원가의 합계액

$$\times \frac{\text{국산기자재의 매입원가}}{\text{국산기자재의 매입원가} + \text{국산외의 기자재 매입원가}}$$

3)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가. 지원대상기업(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제1항)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세제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다음의 시설에 투자를 한 개인사업자 또는 내국법인이다.

① 에너지절약시설

② 공해방지시설

③ 유통산업근대화시설

④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탁기

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

⑤ 산업재해예방시설

⑥ 광산보안시설 등

나. 지원대상투자의 범위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세제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투자는 1997년 1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0일까지 특정설비에 투자한 경우로서 그 투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에너지절약시설(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로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표 4)의 에너지절약 시설과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시설

4)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가. 조세지원 대상기업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업은 제조업(노후시설을 개체하기 위한 시설에는 광업을 포함한다)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다음의 시설에 투자하는 자이다.(단,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의 경우는 중소기업만 해당된다)

- ①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 ② 첨단기술설비
- ③ 노후시설의 개체를 위한 시설
- ④ 공업발전법에 의한 합리화시설



3. 기술 및 인력개발지원

수년간 축적된 기술개발 능력과 자본력을 갖춘 중소기업이라도 국제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품목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에는 망설이기 마련이다. 이에 대한 기술개발사업을 적극유치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기술 및 인력개발제도가 있다.

1)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가. 설정대상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 ① 제조업, 광업
- ② 건설업
- ③ 엔지니어링사업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제공하는 사업
- ④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
 - 컴퓨터설비자문업, 소프트웨어의 자문·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업 및 데이터베이스업
- ⑤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의 가공조립·정비 및 연구개발사업
- ⑥ 금융·보험업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 2에 규정된 법인에 한한다.
- ⑦ 부가통신업
- ⑧ 연구 및 개발업
- ⑨ 무역업
- ⑩ 유선방송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 ⑪ 물류산업
- ⑫ 가스제조 및 공급업

나.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제1항)

손금산입한도액 =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3% (기술집약적 산업은 4%)

2)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가. 적용대상 사업(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으며

기술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사업(무역업 제외)과 동일하다.

- ① 제조업, 광업
- ② 건설업
- ③ 엔지니어링사업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제공하는 사업
- ④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
 - 컴퓨터설비자문업, 소프트웨어의 자문·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업 및 데이터베이스업
- ⑤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의 가공조립·정비 및 연구개발사업
- ⑥ 금융·보험업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 2에 규정된 법인에 한한다.
- ⑦ 부가통신업
- ⑧ 연구 및 개발업
- ⑨ 무역업
- ⑩ 유선방송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 ⑪ 물류산업

나. 세액공제 적용방법(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

(1) 증가지출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방법

직접 2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년평균 지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의 50%를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년평균 지출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 다.

이 경우 당해 기업의 최초 과세년도 개시일부터 당해 과세년도 개시일까지의 기

간이 24월 미만인 경우에는 동 기간에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24월로 환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년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본다.(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산 식〉

$$2\text{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년평균 지출액} \times \frac{\text{당해 과세년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2} \times \frac{\text{당해 과세년도월수}}{12}$$

위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월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년도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하고, 과세년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2) 경상지출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방법(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

위(1)의 증가지출분에 대한 세액공제의 방법을 적용받지 않고 당해 과세년도에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5%(중소기업의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의 경우에는 15%로 하고, 중소기업외의 자가 중소기업에 지출한 인력개발비의 경우에는 10%)를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경상지출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가지출분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

4. 수출 및 해외시장 개척지원

수출 및 해외시장 개척사업에서 발생하는 거래취소, 계약파기, 대손 및 해외시장 개척비용 등의 손실보전에 충당하기 위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일정기간 유예함으로써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1) 수출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가. 준비금의 설정대상 기업(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수출손실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기업은 수출 및 수출관련사업과 여행, 관광 등 다음의 외화획득사업으로 주로 직접적으로 외화를 획득하여 자기책임하에 손실을 부담하는 내국인이다.

① 수출산업

유상으로 물품을 외국에 판매하거나 송부 또는 반출하는 사업과 외국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

나. 수출손실준비금의 사용 및 상계(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중소기업이 외화획득에서 다음과 같은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직접 손금으로 처리하는 대신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수출손실준비금과 상계처리할 수 있다.

상계시는 먼저 계상한 준비금부터 순차적으로 상계한다.

- 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로 발생한 손실
- ② 계약상의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으로 인한 손실
- ③ 계약의 변경이나 우발적인 사고로 인한 손실

다. 수출손실준비금의 익금환입

(1) 일반적 환입(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3항)

손금에 산입한 수출손실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2년(특정의 수출사업에 있어서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3년 간에 걸쳐 균등한 금액으로 익금에 환입하여야 한다.

$$\text{준비금환입(익금산입)액} = \text{손금산입한 수출손실준비금} \times \frac{\text{당해 사업년수 월수}}{36}$$

특정의 수출사업이란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4조 제2항)

- ① 선박법에 의한 선박(준설선등 특수선과 수상구조물을 포함한다)을 수출하는 사업
- ②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5)에서 제기하는 기계·기구, 신발 및 섬유제품(의류를 말한다)을 수출하는 사업
- ③ 당해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한 국가별 또는 지역별 수출액이 당해 국가별 또는 지역별 수입액에 미달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수출 또는 용역사업

그러나 준비금 환입기간중 외화획득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이미 손금계상한 수출손실준비금과 상계한 경우에는 당해 준비금잔액을 그 익금산입할 대상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text{준비금환입액} = \text{손실과 상계한후의 수출손실준비금잔액} \times \frac{\text{당해 사업년수 월수}}{\text{익금으로 환입할 대상사업년도의 월수}}$$

(2) 일시 환입(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4항)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중소기업이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잔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

- ①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 ②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로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당해 수출손실준비금 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때

2)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손금산입(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가. 준비금의 설정대상 기업(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제1항)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자는 내국인으로서 수출사업 및 해외에
용역을 제공하여 외화를 획득하는 다음의 사업자이다.

①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등록을 한 자

②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③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일반여행업의 등록을 한 내국인

④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하여 해외항만사업의 등록을 한 내국인

나. 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제1항 및 제5항)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은 다음 산식에 의해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 = 당해 과세연도의 수출사업 및 용역사업에서 발생한
외화 수입금액의 1%

※ 특정수출사업인 경우는 외화수입금액의 1% 추가, 특히 자기상표에 의한
수출의 사업이 특정수출사업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2% 추가

5. 창업지원

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가.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1) 창업의 범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

다.(창업지원법 제2조)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된다.(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①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사업의 포괄승계)

②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법인전환, 조직변경)

③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사업의 계속)

(2) 창업중소기업 해당사업의 범위(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3항)

중소기업을 창업함에 있어서 모든 업종의 사업이 지원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며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한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때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조업·광업·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이다.

(3)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조세지원의 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이란 창업해당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및 기술집약형 업종을 창업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 ① 대통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 ② 대통령이 정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나. 조세감면 내용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가)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

① 감면소득 및 감면을

창업관련업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감면대상사업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에 한하므로 은행예금수입이자와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과 같이 당해사업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소득은 감면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② 감면기간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한다.

여기서 감면의 기산시점이 되는 최초 소득발생연도라 함은 이월결손금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에 정(+)의 소득이 발생한 연도를 말한다.

③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란 법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농어촌 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법인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사업을 개시한 법인만을 가르키는 것으로 본다.(대법 93누 3332, 1993. 7. 16)

따라서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본점을 설립하여 창업한 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규정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법인 22601-91, 1992. 1. 13)

(2) 등록세 감면(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 제2항)

①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50% 감면

②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50% 감면

(3) 취득세 감면(조세감면규제법 제114조 제2항)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75% 감면

(4)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조세감면규제법 제115조)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 감면

제 2 절 외국의 조세지원제도

본 절에서는 주요 각국의 조세지원제도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조세지원제도와 비교하여 보다 합리적인 지원제도의 방향을 볼 수 있을 것이다.¹⁰⁾

1) 일본의 조세지원제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세제의 틀이 일본의 세제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각종 조세지원제도도 우리와 비슷하다고 하겠다. 일본의 주요 세제지원제도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일시상각

가. 공해방지시설, 자원재생설비, 특정지역에서의 급수시설 등 : 취득가액의 15% 상각

나. 지진으로 인한 재해방지시설 : 15%, 지진방지건물 : 8%

다. 고도기술산업용 건물(취득가액 1억엔 이상) : 30%, 공장용 연구소 : 15%

라. 저개발지역의 기계, 설비(취득가액 21백만엔 이상) : 15%, 공장용 건물 : 8%

마. 농공산업지구, 석탄광업지역 및 인구저밀지역의기계, 설비(취득가액 19백만엔 이상) : 16%, 공장용 건물 : 8%

바. 중소기업이나 농업협동조합에서 취득하는 기계, 설비(취득가액 1.6백만 이상)

사. 기타 특정 기업의 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사용되는 특정기계나 설비에 대해

10) 이하의 내용은 1992년 10월에 발간된 세계각국의 조세개요(재무부 세제실 국제조세과)중 조세지원제도와 관련된 내용만 발췌한 것임.

서도 일정율의 일시상각이 허용되고 있음.

(2) 특별상각

가. 중소기업의 합리화 개선계획, 직물산업의 구조개선 또는 유연화계획 등을 시행하는 사업과 산업협동조합과 섬유산업 등에 사용되는 기계 : 최초의 5년간 일반상각액의 22%까지 특별상각 허용

나. 회계연도말 사용인의 25% 이상이 장애인인 경우 법인의 기계, 설비 및 건물 : 일반상각액의 14% 허용(공장용 건물 : 일반상각액의 19% 허용)

다. 신축임대용주택 : 최초 5년간 일반상각액의 30% 허용(내용연수 45년 이상인 경우 50% 허용)

라. 도심지역 재개발촉진 건물 : 최초 5년간 일반상각액의 20% 허용

마. 국제관광사업용호텔 : 법정내용연수의 80%까지 단축허용

(3) 각종준비금의 설정

가. 해외시장개척준비금 : 자본금 5억엔 이하의 법인에 대해서만 설정을 허용하되, 자본금 1억엔을 기준으로 설정율에 차이를 두고 있다.

나. 해외투자손실금 : 특정 국가별, 법인종류별로 설정한도액에 차등을 두고 있다.

(4) 세액공제

종전에는 여러가지 세액공제제도가 있었으나 지금은 거의 삭제되고 기초분야의 고도기술을 연구개발하기 위한 시설에 대해 일정율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연구개발비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외에는 시행되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일본에서는 감가상각의 특례조항외에는 조세지원제도가 별로 시행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 미국 및 캐나다의 조세지원제도

미국의 경우에는 주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에서 생기는 이자수입은 원칙적으로 연방세법상 비과세하며, FSC(Foreign Sales Corporation : 외국판매

법인)의 경우 수출매출의 일정소득에 대해 면세적용을 하기도 한다. 또한 수출매출이 1천만불에 미달하는 미국의 수출업자는 DISC(Domestic International Sales Corporation : 미국국제판매법인)를 설립할 수가 있으며, 제조업자도 이연된 소득을 일정한 자산에 투자하고 기타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DISC의 설립에 의해 과세를 이연할 수 있다. 도매업자는 수출소득의 94%에 달하는 소득의 과세를 이연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일정환 상황하에서는 미국법인은 미국 속령에서의 사업활동으로부터 생긴 소득 및 일정한 투자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용 자산에 대해서 100%에 일시상각을 허용하기도 하고 제조, 가공, 채굴, 제재, 농어업 목적으로 하는 신축건물 및 기계설비 등에 대하여는 15%에 45%의 범위내에서 세액을 공제해 주기도 한다. 이 경우 우리나라와는 달리 과거의 납부세액에서 환급을 시켜주기도 한다. 또한 중요산업이나 저개발지역의 투자에 대해서 보조금이나 기타의 장려책이 있으며, 이외에 과학적 연구비용 및 수출업에 대한 장려책도 많이 있다.

3) 영국, 프랑스 및 독일의 조세지원제도

영국의 경우 영국내의 지정지역에서 특정업종을 대상으로 당해 산업에의 신규투자를 장려할 목적으로 한 보조금급부 등의 우대조치를 두고 있다. 또한 영국내의 산업촉진지구내에서 사업을 하는 법인은 그 사업용 건물에 관계되는 자본지출에 대하여 100%의 자본공제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고정자산세나 기술습득각출료 등의 면제 등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다.

프랑스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 및 소프트웨어장비에 대해 최초 1년간에 100%를 상각할 수 있으며, 연구비의 경우도 전년대비 증가분의 50% 상당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이외에 산업부진지대 및 실업대책을 위해 상당한 우대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공업생산활동의 신설·확장에도 일부의 혜택이 주어진다.

독일의 경우 연방정부 및 모든 주정부는 투자촉진을 위해 직접적인 보조금이나 감각상각 같은 세액공제 등의 우대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 중 중요한 우대조치들

을 살펴보면 첫째, 특정사업(선박, 광업, 철강업, 어업 및 건설업)에 대한 교부금, 대부금 및 투자보증 둘째, 선박, 공장, 광업에의 투자, 연구소, 소음, 환경오염방지 시스템 등에 대한 특별상각 등이 있다.

4) 대만의 조세지원제도

대만의 주요 조세지원제도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투자세액공제

기업이 자동화생산설비 혹은 기술에 대한 투자, 산업승급촉진조례 실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오염방지설비 혹은 기술의 구입 및 연구발전, 인재육성, 국제브랜드이미지 확립을 위한 투자를 한 경우 취득원가의 5~20%의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산업의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이 지원의 결핍 또는 발전이 늦은 지역에서의 투자가 일정한 자본액 혹은 인수에 달한 경우 20% 이내의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중요기술산업, 중요투자산업 및 창업투자사업에 대한 세액공제

중요과학기술사업, 중요투자사업 및 창업투자사업의 설립 혹은 확충은 장려하기 위해 특정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가격의 20% 이내를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3) 가속상각

일정한 기업의 고정자산(연구발전, 실험 혹은 품질검사용기구, 설비 및 에너지절약, 대체에너지개발을 위한 기계설비와 산업구조의 개혁, 경영규모의 개선 및 생산공장의 개선에 필요한 설비 등)은 내용년수를 단축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다.

5) 호주와 싱가포르의 조세지원제도

호주의 경우 납세자가 인가받은 관리투자회사에 적어도 4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자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자본 전액의 손금산입이 인정된다. 이 때 투자자본은 신기술을 이용하거나 급성장이 예상되는 등 일정한 목적에 따라 사업에 투

자되어야 한다. 호주의 경우에는 또한 영화산업 및 수출업 등에 대한 우대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세제상의 우대조치도 시행하고 있다.

싱가폴은 총투자액, 기술생산, 수출가능성, 고용기회의 창출, 경제활동에의 일반적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상 광범위한 우대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창업기업의 경우 5년내지 10년에 걸쳐 완전히 과세를 면제해준다든지 수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3년에서 15년 사이에 조건을 충족하는 수출이익의 90% 상당부분의 과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또한 설비투자, 연구개발투자, 신기술기업 및 모험자본에 대한 세무상의 우대조치들이 있다.

제 4 장 제주지역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활용실태 분석

제 1 절 조사개요

1. 연구표본의 선정 및 특성

본 연구의 표본은 제주지역 종업원 5인이상 281개 제조업체중 150개 업체를 임의 추출하여 선정하였다. 설문조사는 논자가 직접 방문조사하였으며, 여의치 않을 경우 우편조사와 전송(FAX)조사방법을 병행하였다.

본 조사는 1997년 9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행해졌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총 122부였다. 이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지나치게 편중화된 12개 설문지를 제거하고, 나머지 110개의 설문지만을 분석대상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형태별로는 법인기업이 75.5%(83개 업체)이고 개인기업이 24.5%(27개 업체)이며, 종업원규모별로는 20인 이하의 소규모기업이 55.5%(61개 업체)로 가장 많고, 21인~50인 이하의 기업은 33.6%(37개 업체), 51인 이상의 기업이 10.9%(12개 업체)로 각각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매출액 규모별로는 3억 미만의 기업이 14.7%(16개 업체), 3억~10억 미만

의 기업이 22.9%(25개 업체)로 조사되었고, 10억 이상의 기업체가 62.4%(68개 업체)로 분포되어 있다.

〈표 4-1〉 연구표본의 특성

단위 : (개, %)

구	분	업체수 (구성비)
기업 형태별 분포	개 인 기 업	27 (24.5)
	법 인 기 업	83 (75.5)
	계	110 (100.0)
종업원규모별 분포	20인 이하	61 (55.5)
	21인 이상	49 (44.5)
	계	110 (100.0)
매출액규모별 분포	10억 미만	42 (38.2)
	10억 이상	68 (61.8)
	계	110 (100.0)

2. 조사목적 및 분석방법

본 조사는 현행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중소기업의 활용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중소기업 육성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소기업 지원세제의 활용여부, 조세부과와 조세제도상의 제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중소기업의 성장 발전과 나아가서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조세지원제도를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본 연구의 설문분석방법은 조사사항을 기업형태별, 종업원규모별, 매출액규모별로 구분하여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하였다.

3. 설문의 구성 및 내용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통한 조사를 주요한 연구방법으로 채택하였고, 설문지의 구성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은 기업의 회계기장방법에 관련된 문항,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유형에 관련된 문항, 세부담이 많은 조세에 관련된 문항, 표준소득율의 적정성에 대한 문항, 중소기업조세지원제도의 활용실태와 관련된 문항, 중소기업조세지원제도의 효과 및 개선사항에 대한 문항, 감면세액의 사용용도와 세액공제제도의 활용상의 저해요인 및 문제점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4-2〉

설문의 구성 및 내용

변 수	설 문 문 항
회계기장방법	B 1
과세표준신고유형	B 2
조세정보취득경로	B 3
애로(세부담)가 많은 세금	B 4
표준소득율 수준의 적정성	B 5
중소기업조세지원제도의 활용실태	B6, B7, B8, B9, B10, B11
중소기업지원세제의 효과	B12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부진 이유	B13
중소기업지원세제의 개선사항	B14
감면세액의 효과적인 사용용도	B15
세액공제제도의 활용상의 저해요인 및 문제점	B16

제 2 절 중소기업의 세무실태 및 만족도 분석

1. 세무행정적 측면

가. 중소기업의 회계기장방법

중소기업의 회계기장방법에 관한 조사에서 <표 4-2>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재무상태 손익거래등 회계에 관한 사항을 직접 기장 하거나 또는 세무사 등에 의뢰하여 기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조사업체 110개 업체중 108개 업체가 회계에 관한 기장을 하고 있었으며 기장을 하지 않는 업체는 2개 업체에 불과하였다.

기장방법에 있어서는 기장하고 있는 업체의 53.75인 58개 업체가 직접 기장하고 있었으며, 46.3%인 50개 업체가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 의뢰하여 기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3>

중소기업의 회계기장방법

(단위 : 개, %)

구 분	직 접 기 장	세무사 등	합 계
업 체 수	58	50	108
(구성비)	(53.7)	(46.3)	(100.0)

나.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유형

1)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유형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유형에 대한 조사에서 <표 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할 때 응답기업의 31.7%인 33개 업체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고 있었고, 상대적으로 많은 64.4%(67개) 업체가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4〉

과세표준 신고유형

(단위 : 개, %)

구	자기조정계산서 첨부 신고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신고	추계신고	합 계
업체수	33	67	4	104
(구성비)	(31.7)	(64.4)	(3.8)	(100.0)

2) 중소기업의 조세정보 취득현황

중소기업은 지원세제 등 조세 또는 각종 세금에 관한 정보를 대부분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 조세 관련 전문가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관련 협회 및 조합 또는 세법관련 도서 등에 의하여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표 4-5〉에서 보면 세무사 등 전문가에 의뢰하는 경우가 61%로 가장 높았으며, 협회 및 조합이 17.1%, 세법 및 도서잡지가 16.2%로 조사 되었다.

〈표 4-5〉

조세정보 취득현황

(단위 : 개, %)

구 분	세무사 등 전문가	세무당국	세 법, 도서잡지	협회, 조합	합 계
업체수	64	6	17	18	105
(구성비)	(61.0)	(5.7)	(16.2)	(17.1)	(100.0)

3) 기업경영상 세부담이나 애로가 많은 세금

중소기업이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현재 세부담이 많거나 애로를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 세금은 기업형태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로 나타났다. 〈표 4-6〉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법인기업의 경우 63.4%인 52개 업체, 개인기업이 64.0%인 16개 업체로 법인 및 개인기업 공히 부가가치세를 꼽았고, 그 다음이 법인세(소득세)로 조사되었다.

<표 4-6>

기업형태별 애로(세부담)가 많은 세금

(단위 : 개, %)

구 분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기타세	합 계	D.F.	X ²	Sig
법 인	23	52	7	82	2	0.00761	0.9962
기 업	(28.0)	(63.4)	(8.5)	(76.6)			
개 인	7	16	2	25			
기 업	(28.0)	(64.0)	(8.0)	(23.4)			
합 계	30	68	9	107			
	(28.0)	(63.6)	(8.4)	(100.0)			

그리고 <표 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업원 규모별로 애로를 겪는 세금을 살펴보면 20인 이하의 기업집단에서는 응답자의 69.5%인 41개 업체가 부가가치세를 가장 애로가 큰 조세로 응답했고, 소득세(법인세)는 20.3%인 12개 업체로 조사되었으며 21인 이상이 기업집단의 경우 소득세(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각각 37.5% (18개 업체), 56.3%(27개 업체)로 역시 부가가치세를 가장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외 특별부가세와 지방세 등 기타세는 미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4-7〉 종업원 규모별 애로(세부담)가 많은 세금

(단위 : 개, %)

구 분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기타세	합 계	D.F.	X ²	Sig
20인 이하	12 (20.3)	41 (69.5)	6 (10.2)	59 (55.1)	2	3.99372	0.1358
21인 이상	18 (37.5)	27 (56.3)	3 (6.3)	48 (44.9)			
합 계	30 (28.0)	68 (63.6)	9 (8.4)	107 (100.0)			

마찬가지로 애로를 느끼는 세금에 대하여 매출액 규모별로 살펴보아도 부가가치세를 가장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형태와 규모에 관계없이 가장 애로를 느끼는 조세는 부가가치세이고 그 다음으로 소득세, 법인세이며 그외 조세는 미미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표 4-8〉 매출액 규모별 애로(세부담)가 많은 세금

(단위 : 개, %)

구 분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기타세	합 계	D.F.	X ²	Sig
10억 미만	9 (23.1)	27 (69.2)	3 (7.7)	39 (36.8)	2	0.70794	0.7019
10억 이상	20 (29.9)	41 (61.2)	6 (8.9)	67 (63.2)			
합 계	29 (27.4)	68 (64.2)	9 (8.5)	106 (100.0)			

4) 기업형태별 표준소득율 수준의 적정성

기업이 장부 등을 비치 기장하고 있지 않아 실제 소득금액을 정확히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정부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결정함에 있어 과세표준 또는 세액결정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현행의 표준소득율은 대체로 적정하나 높다고 생각하는 의견도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9>을 참고하면 표준소득율이 개인기업의 경우 42.3%(11개 업체), 법인기업의 경우 48.2%(40개 업체)가 적정수준이라고 응답했고, 개인기업의 26.9%(7개 업체), 법인기업 36.1%(30개 업체)가 표준소득율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다고 응답하여 개인, 법인기업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기업형태별 표준소득율 수준의 적정성

(단위 : 개, %)

구 분	너무높은 수준이다	낮은수 준이다	적정수 준이다	잘 모르겠다	합 계	D.F.	X ²	Sig
개 인 기 업	7 (26.9)	2 (7.7)	11 (42.3)	6 (23.1)	26 (23.9)	3	3.51197	0.3192
법 인 기 업	30 (36.1)	5 (6.0)	40 (48.2)	8 (9.6)	83 (76.1)			
합 계	37 (33.9)	7 (6.4)	51 (46.8)	14 (12.8)	109 (100.0)			

2. 조세제도적 측면

가.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 활용도 분석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세제 즉, 투자 및 수출촉진, 기술 및 인력개발, 산업합리화 등 산업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정부가 마련한 각종 조세특례규정에 대

한 중소기업의 활용도는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을 참조하면 대부분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 등 산업정책적 목적으로 시행되는 현행의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고, 기업형태에 관계없이 전체 조사기업중 85.3%(93개 업체)가 전혀 활용하지 못하거나 또한 활용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비교적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14.7%(16개 업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0〉 기업형태별 조세지원제도 활용현황

(단위 : 개, %)

구분 \ 활용현황	개인기업	법인기업	합 계	D.F.	Xc ²	Sig
미활용	15 (55.6)	33 (40.2)	48 (44.0)	2	2.26270	0.3226
활용부진	8 (29.6)	37 (45.1)	45 (41.3)			
적절히 활용	4 (14.8)	12 (14.6)	16 (14.7)			
합 계	27 (24.8)	82 (75.2)	109 (100.0)			

또한 〈표 4-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활용현황을 종업원 규모별로 살펴보면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20인 이하의 기업의 경우 미활용이 46.7%인 28개 업체이고, 활용이 부진하다는 응답이 45.0%인 27개 업체인 반면, 21인 이상의 기업에서는 미활용이 40.8%인 20개 업체, 대체로 활용이 부진하다는 응답이 36.7%인 18개 업체, 적절히 활용한다고 응답한 기업이 22.4%인 11개업체로 나타나 20인 이하의 소규모기업보다 활용의 정도가 다소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표 4-11〉 중업원 규모별 조세지원제도 활용현황

(단위 : 개, %)

구분 \ 활용현황	5~20인 이하	21인 이상	합 계	D.F.	X ²	Sig
미활용	28 (46.7)	20 (40.8)	48 (44.0)	2	4.31721	0.1155
활용부진	27 (45.0)	18 (36.7)	45 (41.3)			
적절히 활용	5 (8.3)	11 (22.4)	16 (14.7)			
합 계	60 (55.0)	49 (45.0)	109 (100.0)			

또한 〈표 4-12〉에서도 0.0425의 유의수준에서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활용현황은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0억 미만의 소규모기업의 경우 40개 조사기업중 대부분이 미활용 및 활용부진으로 조사되어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을 거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매출액 10억 이상의 기업의 경우 미활용이 36.8%인 25개 업체, 활용부진이 44.1%인 30개 업체로 나타나 소규모기업과 마찬가지로 활용실태가 대체로 부진하지만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는 응답도 19.1%인 13개 업체로 나타났다.

〈표 4-12〉 매출액 규모별 조세지원제도 활용현황

(단위 : 개, %)

구분 \ 활용현황	10억 미만	10억 이상	합 계	D.F.	X ²	Sig
미활용	23 (57.5)	25 (36.8)	48 (44.4)	2	6.31522	0.0425
활용부진	15 (37.5)	30 (44.1)	45 (41.7)			
적절히 활용	2 (5.0)	13 (19.1)	15 (13.9)			
합 계	40 (37.0)	68 (63.0)	108 (100.0)			

〈표 4-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총 16개 기업으로 조사되었고, 이를 기업형태별로 살펴보면 법인기업이 14개 업체, 개인기업이 2개 업체로 나타나 개인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법인기업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조세지원제도 항목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활용한 기업이 10개 기업(62.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활용한 기업이 2개 업체(12.5%)였으며,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제조업 특별세액감면,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이 각각 1개 업체(7.1)로 나타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만이 그나마 활용하고 있고 그외의 5개 항목은 활용정도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기 지원제도 이외에 여러 조세지원제도가 있지만 활용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

활용 조세지원제도 현황

(단위 : 개, %)

조세지원제도	구 분		합 계
	개인기업	법인기업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2 (100.0)	8 (57.1)	10 (62.5)
임시투자세액공제	0 (0.0)	2 (14.2)	2 (12.5)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0 (0.0)	1 (7.1)	1 (6.2)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0 (0.0)	1 (7.1)	1 (6.2)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0 (0.0)	1 (7.1)	1 (6.2)
합 계	2 (12.5)	14 (87.5)	16 (100.0)

나.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부진 이유

중소기업이 현행의 조세지원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주요요인은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지원제도의 내용과 적용방법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적용요건과 신청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여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기업형태에 관계없이 지원제도의 내용과 적용방법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견해가 33.3%인 35개 업체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별 혜택이 없어서 활용이 부진하다는 의견이 27.4%인 29개 업체로 나타났다. 또한 적용요건 및 신청절차의 복잡성과 소득금액이 적거나 결손이 발생하여 활용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각각 18.9%인 20개 업체, 15.1%인 16개 업체로 나타났다.

<표 4-14> 조세지원제도의 활용 부진 이유

(단위 : 개, %)

구분	개인기업	법인기업	합계	D.F.	X ²	Sig
활용부진이유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별 혜택이 없다.	9 (36.0)	20 (24.7)	29 (27.4)	4	4.10782	0.3916
지원제도의 내용과 적용방법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9 (36.0)	26 (32.1)	35 (33.0)			
적용요건과 신청절차가 복잡하다.	4 (16.0)	16 (19.8)	20 (18.9)			
소득금액이 적거나 결손 이 발생하여 활용 필요 성이 없다.	1 (4.0)	15 (18.5)	16 (15.1)			
세금감면으로 인한 세무조사 등 불리한 처분이 염려된다.	2 (8.0)	4 (4.9)	6 (5.7)			
합계	25 (23.5)	81 (76.5)	106 (100.0)			

다. 조세지원제도의 세금경감 효과

현행 중소기업세계의 실질적인 지원효과(세금경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는데 <표 4-15>에서 보면 「지원제도는 다양하나 세금 경감효과가 적다」와 「지원제도는 잘 되었으나 현행 세정 운영하에서는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30.8%를 차지하여 조세지원제도의 다양성 등에는 일부 긍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기도 하였으나 기업형태에 관계없이 「다양한 제도적 장치로 기업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원제도가 미흡하고 실질적인 세금 경감효과도 적다」고 응답한 기업이 48.1%(50개 업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서 보다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조세지원제도의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15> 기업형태별 조세지원제도의 효과

(단위 : 개, %)

구분	개인기업	법인기업	합계	D.F.	X ²	Sig
지원효과						
지원대상이 다양하나 세금 경감효과가 적다	2 (8.7)	16 (19.8)	18 (17.3)	3	2.47214	0.4803
지원제도는 잘 되었으나 현행 세정운영하에서는 활용 불가하다	3 (13.0)	11 (13.6)	14 (13.5)			
지원제도가 미흡하고 실 질적인 세금 경감효과도 적다.	11 (47.8)	39 (48.1)	50 (48.1)			
다양한 제도적 장치로 기업경영에 많은 도움이 된다.	0 (0.0)	0 (0.0)	0 (0.0)			
그저 그렇다	7 (30.4)	15 (18.5)	22 (21.2)			
합계	23 (22.1)	81 (77.9)	104 (100.0)			

〈표 4-16〉

매출액규모별 조세지원제도의 효과

(단위 : 개, %)

구분	10억 미만	10억 이상	합 계	D.F.	X ²	Sig
지원효과						
지원제도는 다양하나 세금 경감효과가 적다	8 (21.1)	10 (15.4)	18 (17.3)	3	3.06871	0.3812
지원제도는 잘 되었으나 현행 세정운영하에서는 활용 불가하다	7 (18.4)	6 (9.2)	13 (13.5)			
지원제도가 미흡하고 실질적인 세금 경감효과 도 적다.	15 (39.5)	35 (53.8)	50 (48.5)			
다양한 제도적 장치로 기업경영에 많은 도움이 된다.	0 (0.0)	0 (0.0)	0 (0.0)			
그저 그렇다	8 (21.1)	14 (21.5)	22 (21.4)			
합 계	38 (36.9)	65 (63.1)	103 (100.0)			

라. 중소기업지원세제의 개선사항

중소기업조세지원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실질적인 세부담 경감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선사항을 〈표 4-17〉에서 살펴보면 감면서류의 완화 또는 절차의 간소화가 전체응답자중 26.4%(28개 업체), 세액공제와 같은 감면효과가 직접적인 직접감면 방법의 확대가 24.5%(26개 업체), 지원대상 및 범위의 확대가 18.9%(20개 업체)로 나타났고, 세무조사 완화 등 행정지원의 강화가 15.1%(16개 업체)로 조사되었다.

〈표 4-17〉

기업형태별 조세지원제도의 개선사항

(단위 : 개, %)

구분	개인기업	법인기업	합 계	D.F.	X ²	Sig
개선사항						
감면서류의 완화 및 절차의 간소화	6 (24.0)	22 (27.2)	28 (26.4)	5	1.89922	0.8629
지원대상 범위의 확대	6 (24.0)	14 (17.3)	20 (18.9)			
공제율 등 감면폭과 기간 확대	3 (12.0)	8 (9.9)	11 (10.4)			
세액공제 등 직접 감면확대	7 (28.0)	19 (23.5)	26 (24.5)			
세무조사완화 등 행정지원 강화	2 (8.0)	14 (17.3)	16 (15.1)			
지원세제 홍보 및 교육강화	1 (4.0)	4 (4.9)	5 (4.7)			
합 계	25 (23.6)	81 (76.4)	106 (100.0)			

그런데 매출액 규모별로 지원제도의 개선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다소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8〉에서 보면 연간매출액 10억 미만 기업의 경우 감면서류의 완화 및 절차의 간소화와 세액공제 등 직접감면의 확대가 27.5%(11개 업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감면폭의 확대와 행정지원강화가 각각 15%(6개 업체), 12.5%(5개 업체)로 분석되었다.

또한 10억 이상의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감면서류의 완화 및 절차의 간소화와 지원대상 범위의 확대가 각각 26.2%(17개 업체), 세액공제 등 직접감면 확대가 21.5%(14개 업체)로 전체의 73.9%(48개 업체)를 차지하여 가장 비중이 컸으며 세무조사 완화 등 행정적 지원의 강화가 16.7%(11개 업체)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매출액 규모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감면서류의 완화, 절차의 간소화와 세액공제 등 직접감면의 확대, 지원대상 및 범위의 확대, 행정적인 지원의 강화가 현 조세지원제도의 가장 중요한 개선사항으로 분석되었다.

〈표 4-18〉

매출액규모별 조세지원제도의 개선사항

(단위 : 개, %)

구분	10억 미만	10억 이상	합 계	D.F.	X ²	Sig			
개선사항									
감면서류의 완화 및 절차의 간소화	11 (27.5)	17 (26.2)	28 (26.7)	5	10.21322	0.0694			
지원대상 범위의 확대	3 (7.5)	17 (26.2)	20 (19.0)						
공제율 등 감면폭과 기간 확대	6 (15.0)	5 (7.7)	11 (10.5)						
세액공제 등 직접 감면확대	11 (27.5)	14 (21.5)	25 (23.8)						
세무조사완화 등 행정지원 강화	5 (12.5)	11 (16.9)	16 (15.2)						
지원세제 홍보 및 교육강화	4 (10.0)	1 (1.5)	5 (4.8)						
합 계	40 (38.1)	65 (61.9)	105 (100.0)						

마. 감면세액의 효과적인 사용용도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조세감면규제법 등에 의해 세금감면을 받는 경우 그러한 감면상당액을 세법규정과는 관계없이 임의대로 사용한다면 주로 자본전입 결손보전과 기업의 운전자금, 자동화 및 설비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감면상당액의 가장 효과적인 사용용도에 대해서 조사기업의 24.0%(25개 업체)가 자본전입 결손보전, 23.1%(24개 업체)가 기업의 운전자금으로 나타나 현재 경영여건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동화 등 설비투자와 기술 및 연구개발이 각각 19.2%(20개 업체), 17.3%(18개 업체) 총 36.5%(38개 업체)로 어느 정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종업원을 위한 복지시설의 확충은 조사기업의 4.8%(5개 업체)로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현행 세법은 기업이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으로 세금을 감면받는 경우 감면상당액의 사용을 일정한 용도에 한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법인의 경우 감면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이를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기업의 경우는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 등 부채상환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경제여건 및 경영여건의 변화에 따라 자동화 등 설비투자 및 기술과 연구개발의 필요성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감면된 세액상당액의 사용에 제한을 둔 것은 감면상당세액이 비생산적이고 정책목적에 반하는 방향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감면의 본래의 취지에 합당하게 쓰여지도록 유도하는 것임을 고려한다면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사용용도의 제한에도 신축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표 4-19〉 감면세액의 효과적인 사용용도

(단위 : 개, %)

구분	개인기업	법인기업	합 계	D.F.	X ²	Sig
사용용도						
자본전입 결손보전	3 (12.5)	22 (27.5)	25 (24.0)	5	4.53411	0.4753
자동화 등 설비투자	7 (29.2)	13 (16.3)	20 (19.2)			
기술 및 연구개발	3 (12.5)	15 (18.8)	18 (17.3)			
부채상환	4 (16.7)	8 (10.0)	12 (11.5)			
복지시설 확충	1 (4.2)	4 (5.0)	5 (4.8)			
운전자금	6 (25.0)	18 (22.5)	24 (23.1)			
합 계	24 (23.1)	80 (76.9)	104 (100.0)			

바. 세액공제제도의 활용상의 저해요인 및 문제점

현행 조세지원제도중 직접감면방법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는 세액공제제도는 설비투자의 촉진, 기술 및 인력개발, 구조조정 등 특정한 경제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투자금액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직접 공제함으로써 공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그 효과가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면에서 중소기업들이 선호하고 있는 제도이다. 현행 세액공제제도의 활용상의 문제점이나 저해요인에 대하여 <표 4-20>에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조사기업의 53.4%(55개 업체)가 적용범위 등 공제조건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였고, 19.4%(20개 업체)가 신청절차 및 서류의 복잡성을 지적하였으며 종합한도가 적용되어 경감효과가 적다는 응답자가 17.5%(18개 업체)를 차지하였고, 이를 매출액규모별로 살펴보면 도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4-20> 기업형태별 세액공제제도의 활용상의 저해요인 또는 문제점

구분	개인기업	법인기업	합 계	D.F.	X ²	Sig
저해요인						
적용범위 등 공제 조건이 까다롭다	12 (54.5)	43 (53.1)	55 (53.4)	3	0.94089	0.8156
신청절차 및 서류가 복잡하다	3 (13.6)	17 (21.0)	20 (19.4)			
종합한도가 적용되어 경감효과가 적다	5 (22.7)	13 (16.0)	18 (17.5)			
세액공제율이 낮다	2 (9.1)	8 (9.9)	10 (9.7)			
합 계	22 (21.3)	81 (78.6)	103 (100.0)			

〈표 4-21〉 매출액규모별 세액공제제도 활용상의 저해요인 및 문제점

(단위 : 개, %)

구분	10억 미만	10억 이상	합 계	D.F.	X ²	Sig
저해요인						
적용범위 등 공제 조건이 까다롭다	20 (52.6)	35 (54.7)	55 (53.9)	3	2.54458	0.4673
신청절차 및 서류가 복잡하다	7 (18.4)	12 (18.8)	19 (18.6)			
종합한도가 적용되어 경감효과가 적다	9 (23.7)	9 (14.1)	18 (17.6)			
세액공제율이 낮다	2 (5.3)	8 (12.5)	10 (9.8)			
합 계	38 (37.3)	64 (62.7)	102 (100.0)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세액공제는 각기 공제대상이 되는 투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적용범위가 제한적이거나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 세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으로서는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특히 영세기업의 경우는 그 신청절차의 번거로움을 먼저 생각하고 스스로 활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세액공제율이 다소 낮고 세액공제시 종합한도가 적용되고 있어 소득금액이나 세액규모가 적은 중소기업으로서는 세금경감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제 3 절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는 금융지원, 조세지원,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그리고 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제도 등 다양한 수단을 들 수 있다. 이 중 조세지원제도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것은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조세지원

수단을 개발한다거나,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조세부담을 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의미인데, 현재로서는 조세감면규제법이 가장 중요한 법적장치가 되고 있다. 중소기업조세지원제도를 금융지원제도와 비교해 볼 때, 어느 기업이나 요건만 갖추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간 지원의 중립성이 높은 지원제도라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또한 투자규모에 따라 세액공제 범위가 결정되는 등 투자유인효과가 크고, 절감된 세액의 사내유보를 통해 기업의 자금사정을 호전시켜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선별적 지원의 성격이 강한 금융지원에 비해 중소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지원수단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이 조세지원제도와 중소기업이 납부할 세액을 직접 감면해 주는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와 세금징수를 유예해 주는 준비금, 특별상각 등이 있으나 설문조사결과 중소기업들은 현행 조세지원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현황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에는 직접지원방식이라 할 수 있는 세액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와 간접방식으로 분류되는 준비금 및 특별상각제도 등이 있다.

조세제도를 이용한 국고보조의 성질을 갖고 있는 직접지원방식인 세액감면은 일정기간동안 특정사업에서 발생한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적으로 감면해 주는 방법으로 수익율이 높을수록 수혜규모가 커지는 효과를 갖는 제도이며, 소득공제는 특정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일정율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설비투자를 요하지 않는 산업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한 제도이다.

한편, 과세이연에 의한 재정자금의 무이자 용자의 성질을 갖고있는 간접지원방식인 준비금은 장래에 발생할 비용(투자)에 대비하여 일정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미리 비용으로 계상케 하여 사내에 유보해 두었다가 당해 사용목적이 발생할 경우 이와 상계하거나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이익금에 산입함으로써 세금을 실제보다 늦게 납부하는 징세의 유예제도이고, 특별상각은 일반감가상각비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감가상각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기업의 자체금융기능 강화를 위한 간접지원의 효과가 있는 조세지원제도이다.

2. 현행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

가.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세제지원방안에 대한 개선점으로는 제3장에서의 실태조사에 의한 보고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본 조사에 의하면 조세감면에 대한 제반규정 및 조건, 절차 등이 복잡하고 난해하여 활용에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지원세제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가능한 알기쉬운 지원세제 지원과, 이에 대한 홍보와 경영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2) 또한 지원제도가 미흡하고 실질적인 세금경감효과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 세액공제등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

3)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당면과제인 기술인력양성 및 생산성 향상, 신제품 개발 및 고품질화를 위하여 자동화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계속적이면서 현행 감면공제율보다 상향조정하여 기업의 투자욕을 고취시켜야 한다.

4) 세무행정적인 측면에서 세무조사의 완화 등 행정적인 지원도 아울러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5) 중소기업이 지급받는 대기업 또는 원청회사에 대한 약속어음 등의 부도와 미수채권에 대해서는 부도액에 대한 일정율의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세액공제제도를 법령으로 제정하여 자금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이 이를 기업합리화의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중소기업의 투자촉진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투자준비금 설정한도를 확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기간을 연장하여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 요망된다.

6) 중소기업이 공장신축을 위하여 공장부지를 구입하였을때 자금사정 등으로 인하여 건설에 착공하지 못하였을 때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간주되어 지방세의 증가 및 기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기간을 연장이 요망되며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으로서는 유휴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대도시 주변의 공장을 확보할 수 없고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종업원 확보가 어렵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이러한 부분에 세제 및 행정지원의 강화가 절실히 요청된다.

제 5 장 요약 및 결론

그간 수차례에 걸친 세제개편을 통해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도 공평성과 중립성을 제고, 그리고 재정수입의 확보와 소득재분배 기능에 어느 정도 주력하여 왔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현행 조세지원체제도 중소기업의 창의와 활력을 제고시켜 중소기업의 자주적 노력에 의해 국내외 경제환경여건 변화에 대응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중소기업특성을 위한 조세지원체도의 개편방향도 마땅히 이러한 과제 의 해결과 함께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 방향과 결부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 조세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제주지역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현행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활용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조세에 관한 제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행정적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회계기장방법은 직접기장이 53.7%,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 의뢰 기장하는 것이 46.3%로 나타났다.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유형은 외부조정계산서 첨부신고가 64.4%, 자기조정계산서 첨부신고가 31.7%로 나타났고, 조세정보 취득현황은 세무사 등 전문가가 61.0%, 협회 및 조합이 17.1%, 세법 및 도서잡지가 16.2%, 세무당국이 5.7%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애로(세부담)가 많은 세금으로는 부가가치세가 6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소득세(법인세)가 28.0%로 조사되었다. 표준 소득율의 적정성은 적정수준이다 46.8%, 너무 높은 수준이다가 33.9%, 잘 모르겠다가 12.8%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세제도적 측면에서 먼저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도를 살펴보면 미활용이 44.0%, 활용부진이 41.3%로 기업형태에 관계없이 활용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이 부진한 이유로는 지원제도의 내용과 적용방법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가 33.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별 혜택이 없다가 27.4% 순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원제도 활용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활용한 기업이 62.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그외 지원제도는 활용정도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원제도의 세금경감효과에 대해서는 지원제도가 미흡하고 실질적인 세금경감효과도 적다가 48.1%, 지원제도는 다양하나 세금경감효과가 17.3%, 지원제도는 잘 되었으나 현행 세정 운영하에서는 활용이 불가하다가 13.5%로 나타나 대부분의 기업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조세지원제도의 개선사항으로는 감면서류의 완화 및 절차의 간소화가 26.4%, 세액공제등 직접감면의 확대가 24.5%, 지원대상 범위의 확대가 18.9%, 세무조사 완화 등 행정지원 강화가 15.1% 순으로 분석되었다.

감액세액의 효과적인 사용용도는 자본전입결손보전이 24.0%, 운전자금 23.1%, 자동화 등 설비투자 19.2%, 기술 및 연구개발 17.3% 순으로 나타나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사용용도의 제한에 신축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세액공제제도의 활용상의 저해요인 및 문제점으로는 적용범위 등 공

제조건이 까다롭다 53.4%, 신청절차 및 서류가 복잡하다는 19.4%, 종합한도가 적용되어 경감효과가 적다는 17.5%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첫째, 제주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만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한계가 있다. 둘째, 조세지원제도 활용실태 조사를 설문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해당기업의 결산서에 나타난 실제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는 못하였다.



〈參考文獻〉

〈單行本〉

- 김종재, 중소기업경영론, 이론과 실제, 박영사, 1997.
- 김윤환·변형운, 한국경제론, 서울 : 유평출판사, 1987
- 유한성, 재정학, 서울 : 박영사, 1993
- 박상범, 중소기업론, 서울 : 삼영사, 1993
- 박충환, 중소기업의 조세지원과 법인전환 및 기업통합, 서울 : 한국세무경영사, 1993.
- 박태호, 세계경제와 한국, 서울 : 매일경제신문사, 1992.
- 이필우, 재정학개론, 서울 : 법문사, 1992
- 조희영·박강범, 중소기업경영론, 서울 : 대영사, 1988
- 조관행, 중소기업사전, 에코노미아, 1996.

〈論 文〉



- 권영주, UR에 대비한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92
- 김정수,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 월간조세, 1992. 9월호
_____, 행정규제완화조치내용, 서울 : 중소기업중앙회, 1993.
- 김진동, 우리나라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 : 경성대학교 무역대학원, 1992
- 김청성, 중소기업 금융지원효율화방안, 서울 : 중소기업중앙회, 1995
- 박충환, 중소기업의 조세지원과 법인전환 및 기업통합, 서울 : 한국세무경리사, 1993.

- 백낙기·양현봉,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 활용실태와 효과분석,
서울 : 중소기업학회, 1991.
- 이종성,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 :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1991.
- 이현규, 중소기업조세지원제도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93.
- 임기혁,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실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경영대
학원, 1996.
- 임주영, 조세지원제도의 운영방향, 서울 : 한국조세연구원, 1993.
- 장현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조세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 : 경희대
학교 경영대학원, 1993.
- 정운서, 중소기업조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 : 경위대학교 경영대학원,
1991.
- 허남수,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93.



<기 타>

- 김태보, 제주지역산업구조의 발전방향과 지방중소기업 육성방안, 사회발전연구 제
12집, 제주대학교 지역사회발전연구소, 1996.
-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경제현황, 1997.
- 제주도, 제주도 통계연보, 1996.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97 중소기업지원제도, 1996. 12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지원제도, 1996. 11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조세지원제도안내, 1995. 12
- 한국은행제주지점, 제주지역의 고부도율 요인분석 및 대응방안, 1997. 1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조세지원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연구”, 1990.

- 중소기업협동중앙회, “주요국의 중소기업 관련통계”, 1990.
- _____, “중소기업의 세정이용 및 애로 실태분석” 1995.
-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의 경영 거래환경과 조세부담에 관한 실증연구”, 1994.
- 통상산업부, “중소기업에 관한 년차보고서”, 1995.
- 조세통람사, “조세편람”, 1997.
- 이재우, “법인세 해설과 신문”, 한국세정신문사, 1994.
- 加藤誠一, “中小企業の國際比較”, 東洋經濟新聞社, 昭和 46.
- 일본중소기업청, “중소기업백서”, 각년도.
- 통계청, “광공업 통계조사 보고서”, 각년도.
- 김건희,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1994.
- 박충환, “중소기업의 조세지원과 법인전환 및 기업통합”, 한국세정신문사, 1991.
- 통상산업부, “중소기업에 관한 년차보고서”, 1987
- 이영근, “한국조세행정의 이념적 평가와 그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1995.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설 문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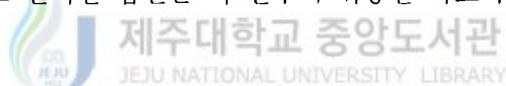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에 다니고 있는 이동화입니다.

본 설문서는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합리적인 조세지원 대책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설문서는 무기명으로 작성되고, 그 결과는 통계처리되어 학술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므로 귀하의 의견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될 것입니다.

귀하의 솔직하고 진지한 답변은 이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귀하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석사과정

이 동 화

▣ 아래 사항을 읽고 해당란에 ○표 해 주십시오.

1. 귀사의 기업형태는?

가. 개인기업 나. 법인기업

2. 귀사의 종업원 규모는?

가. 5~20인 이하

나. 21~50인 이하

다. 51~100인 이하

라. 101~200인 이하

마. 200이상



3. 귀사의 매출액 규모는(년간기준)?

가. 5천만원 이하

나. 5천~1억원 이하

다. 1억~3억원 이하

라. 3억~10억원 이하

마. 10억 이상

4. 귀사의 회계기장 방법은?

가. 직접기장 나. 세무사 등 다. 무기장

5. 귀사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유형은?

- 가. 자기조정계산서 첨부신고
- 나. 외부조정계산서 첨부신고
- 다. 추계신고
- 라. 무신고

6. 귀사의 조세정보 취득경로는?

- 가. 세무사 등 전문가
- 나. 세무당국
- 다. 신문방송보도
- 라. 세법, 도서잡지
- 마. 협회 및 조합
- 바. 기타

7. 귀사의 기업경영상 애로(세부담)가 많은 세금은?

- 가. 소득세(법인세)
- 나. 부가세
- 다. 상속세
- 라. 특별부가세
- 마. 토초세
- 바. 관 세
- 사. 지방세

8. 표준소득을 수준의 적정성은?

- 가. 너무 높은 수준이다.

- 나. 낮은 수준이다.
- 다. 적정수준이다.
- 라. 잘 모르겠다.

9.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활용현황은?

- 가. 미활용
- 나. 활용부진
- 다. 적절히 활용
- 라. 최대한 활용

10. 현행 조세지원제도중 귀사에서 활용한 제도는?

- 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나.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다. 기술,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라. 생산성향상 시설(설비) 투자세액공제
- 마. 지방이전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 바. 산업합리화에 따른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1. 현행 조세지원제도중 귀사에서 활용한 세액감면제도는?

- 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다.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라.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마.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2. 현행 조세지원제도중 귀사에서 활용한 준비금제도는?

- 가.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준비금
- 나. 기술개발준비금
- 다. 공장지방이전준비금
- 라. 수출손실준비금
- 마. 해외시장개척준비금
- 바. 해외사업손실준비금
- 사. 해외투자손실준비금
- 아. 법인본사 지방이전준비금
- 자.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투자준비금

13. 현행 조세지원제도중 귀사에서 활용한 특별감가상각제도는?

- 가.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투자설비특별상각
- 나. 지방이전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특별상각
- 다. 의료기기 시설투자에 대한 특별상각

14. 중소기업지원세제의 지원효과는?

- 가. 지원제도는 다양하나 세금경감효과가 적다.
- 나. 지원제도는 잘 되었으나 현행 세정운영하에서는 활용불가하다.
- 다. 지원제도가 미흡하고 실질적인 세금 경감효과도 적다.
- 라. 다양한 제도적 장치로 기업경영에 많은 도움이 된다.
- 마. 그저 그렇다.

15.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활용이 부진한다면, 그 이유는?

- 가.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별 혜택이 없다.

- 나. 지원제도의 내용과 적용방법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 다. 적용요건과 신청절차가 복잡하다.
- 라. 소득금액이 적거나 결손이 발생하여 활용 필요성이 없다.
- 마. 세금감면으로 인한 세무조사 등 불리한 처분이 염려된다.
- 바. 서면조사 결정(성실신고 인정)을 받기 위해 활용하지 않았다.

16. 중소기업지원세제의 개선사항은?

- 가. 감면서류의 완화 및 절차의 간소화
- 나. 지원대상 범위의 확대
- 다. 공제율 등 감면 폭과 기간 확대
- 라. 세액공제 등 직접감면 확대
- 마. 세무조사 완화 등 행정지원 강화
- 바. 지원세제 홍보 및 교육강화

17. 감면세액의 효과적인 사용 용도는?

- 가. 자본전입 결손보전
- 나. 자동화 설비투자
- 다. 기술개발 및 연구
- 라. 부채 상환
- 마. 복지시설 확충
- 바. 운전자금

18. 세액공제제도의 활용상의 저해요인과 문제점은?

- 가. 적용범위 등 공제조건이 까다롭다.
- 나. 신청절차 및 서류가 복잡하다.

- 다. 종합한도가 적용되어 경감효과가 적다.
- 라. 동일투자에 대해 중복지원이 배제된다.
- 마. 세액공제율이 낮다.
- 바. 세무당국이 투자비용을 인정 안한다.

♣ 대단히 감사합니다. ♣

